

「2021 뿌리기업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」 모집 공고

뿌리기업 신규취업자의 안정적인 직업 영위를 위한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으로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지하여 경력형성 및 뿌리산업 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도모하고자 「인천 뿌리기업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」 모집을 다음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4월 20일

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인천 뿌리기업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
 - 사업기간 : 공고일 ~ 2021. 12 (사업비 소진 시 접수 마감)
 - 지원내용 : ‘인천 소재 뿌리기업’ 에 근무하는 ‘인천 거주 근로자’ 에게 2년간 경력형성장려금 최대 360만원(생애1회) 지원.
 - 지원대상 : ‘뿌리기업 지원 프로그램’ 참여중인 인천소재 뿌리기업에 신규취업 후 현재 근무 중인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천 시민
 - 취업시점은 아래 ①, ② 중 하나를 충족
 - 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(3개월 이상 근무한 자)
 >> 뿌리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인지 반드시 사전에 문의 (문의처 032-260-0873)
 - ②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알선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자
- 인천뿌리산업 일자리센터 알선이란?**

 - * 뿌리기업 취업을 원하는 인천시민일 경우, 구직알선 지원
 - * 절차 : 참여신청 → 구직지원(뿌리기업 알선, 동행면접) → 취업 → 경력형성장려금 → 경력관리
- ③ 계약연봉(기본급+기본상여금) 기준 월소득 3,187,160원 이하 근로자
 ※ 코로나19 긴급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소득기준 완화함
 - ④ 기타 세부지원 요건은 본 공고문 ‘II 지원요건의 1항’ 을 확인
- 지급방식 : 분기별(3개월 단위) 만근시점마다 지급신청서 제출
 *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입금

II 지원요건

1 인천 뿌리기업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요건 (근로자 대상)

- 《취업기업》 ‘뿌리기업 지원프로그램’ 참여기업에 한정

《사전 문의시 참여기업이 아닐 경우, 기업의 참여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》
 * ‘뿌리기업 지원프로그램’ 기업 및 근로자 참여신청 동시에 진행 가능

- 《신규취업자》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
 - (기업요건) 인천 소재 뿌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
 - (취업시점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(3개월 이상 근무한 자)
 - (연령기준) 제한없음
 - (근무조건)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
 - ※ 4대보험 가입, 근로계약서 작성, 급여명세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
 - (근무내용) 기능기술연구직 등 현장근로 및 사무직 근로자
 - ※ 사무직은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자
 - (소재지) 인천거주 시민이 관내 기업에 취업(등본상 인천시 거주)
 - (취업이력) 취업일 기준 지난 6개월간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 이력이 없는 자
 - (급여수준) 계약연봉 기준 월소득 3,187,160원 이하 근로자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음
 - ※ 계약연봉 기준 : 기본급 + 정기상여금 (잔업, 특근 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)

소득구간(월)	지원금액	지원기간	총 합 계
3,187,160원 이하 근로자	1년차-20만원/월(60만원/분기) 2년차-10만원/월(30만원/분기)	24개월(8분기)	360만원

※ 주40시간 근무 기준 급여로, 주35시간~39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보정 금액을 적용

- 지원제외 대상
 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관외(인천 외)로 되어 있는 자
 -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, 4대 보험 미가입자, 급여명세서 발행이 불가능한 자 등
 -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
 - 취업일 기준 지난 6개월간 동일한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
 - 군복무 대체 근무인 병역 특례자(병역특례 채용일로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)
 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- 취업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·인척
 - 이사급 이상의 간부로 재직중인 자
 -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 자
 - 기타, 수행기간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-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일자리사업 참여자
 - ▶ 개인 대상 장려금 수혜자는 경력형성장려금 지원 불가
 - ▶ 기업에만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형성장려금 지원 가능

지원가능	지원불가
-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(한국산업단지공단)	- 청년내일채움공제 -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* 현 직장에서 내일채움공제 참여 예정 신청 불가 -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(한국장학재단) -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(취업성공수당 수령 시, 고용노동부) - 새일여성인턴 사업 등 - 취업 축하 장려금 혹은 개인지원금 사업은 중복수혜로 지원 불가 - 기타 개인 대상 장려금 수혜자 - 1석5조 인천 재직 청년드림포인트

<중복대상 관련 유의사항>

- 가. 기재된 사업 외에도 사업별로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위 지원불가 항목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나. 참여사업의 중복수혜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경력형성장려금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본 사업 참여로 인해 타 지원사업 참여불가의 경우 귀책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○ **지원금 중단(중단) 및 기타**

- 지원대상자가 경력형성장려금 지원기간 중 중도퇴사 및 이직한 경우
- 지원대상자가 뿌리센터의 요청자료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락이 안되거나 회신 거절한 경우
- 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
-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
- 참여근로자 및 참여기업이 시행지침, 신청서, 협약서 등의 내용과 상이하게 참여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수행기관 부서장이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

② 뿌리기업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조건 (기업 대상)

-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「**뿌리기업 지원사업**」에 참여를 원하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(소재지 기준) 관내에 사업장을 둔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상의 중소기업과 『중견기업법』상 중견기업
 - (업종기준)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 - ▶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

- 뿌리산업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
- ▶ 공장등록증 상의 뿌리업종을 확인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뿌리산업의 범위 : [별첨2] 참조
- (의무사항) 근로계약서 체결, 급여명세서 발행, 4대 보험 준수, 사업참여를 위한 의무사항 확약 등

○ 제외대상

- 신청일 현재 뿌리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관외로 되어있는 기업
- 근로계약서 작성, 4대 보험 등 기본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
- 기타, 수행기간에서 사업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

※ 뿌리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 시, ‘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’ 에서 운영하는 뿌리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

III 지원절차

1 인천 뿌리기업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 (근로자 대상)

○ 신청 및 지원프로세스 ※ 사업비 소진 시 지원종료



○ 신청방법 : 근로자가 직접 서류 구비후 접수(방문, 이메일, 팩스), 기업에서 접수대행 가능
- 제출서류

1차 참여 및 지급신청	2~8차 지급신청
<p>[구직자만 제출]</p> <p>① 구직요청서(워크넷상의 구직표에 의거하여 작성) ② 경력형성장려금 참여신청서</p> <p>[취업자만 제출]</p> <p>① 경력형성장려금 참여신청서(서식1)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서식2) ③ 경력형성장려금 지급신청서(서식3) ④ 참여자확약서(서식4) ⑤ 주민등록등본(신청일로부터 15일내) ⑥ 근로계약서(임금 미기재시 임금계약서 포함 제출) ⑦ 4대보험가입증명서(개인 혹은 사업장에서 발급) *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://www.4insure.or.kr ⑧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(신청차수 산출기간 기준) ⑨ 임금통장사본 - 1회차만 제출</p>	<p>① 경력형성장려금 지급신청서(서식3) ② 참여자확약서(서식4) * 2회차 이후 확약서 서식은 별도 배부예정 ③ 주민등록등본(신청일로부터 15일내) ④ 4대보험가입증명서 * 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⑤ 최근 급여명세서 ⑥ 기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</p>

○ 지원금 지급

- 기본적으로 분기별 지급
- 2022년도 계속사업 확정시 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
- ※ 단,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이어야 함. 퇴사 시 지원 불가
(계속사업 미확정시 2021. 12월 기준으로 종료)

2) 뿌리기업 지원프로그램 참여방법 (뿌리기업 대상)

○ 참여신청 ※ 수시접수

참여 신청	1. 사업공고 (ITP)	- https://www.itp.or.kr , 비즈오케이
	2. 참여신청서 제출 (뿌리기업 → ITP)	- 제출서류 : [서식5]참여신청서 - 제출방법 : 방문, 팩스, 이메일
	3. 참여기업 확정 (ITP → 뿌리기업)	- 등록자격 심사 (관내뿌리기업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발급, 4대보험 가입 이행 등 확인) - '뿌리기업 지원프로그램'참여기업 등록

○ 참여기업에 대하여 구인지원, 일자리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, 각종 사업 공고시 안내

IV 문의사항

○ 인천테크노파크 전략산업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

- 연락처 : (전화) 032-260-0873 (팩스) 032-712-2732
- 이메일 : khj2233@itp.or.kr
- 주 소 : 인천 연수구 갯벌로12 갯벌타워 12층
- ※ 상세 내용은 www.itp.or.kr 공고 첨부파일 확인

첨 부 : 1. 근로자용 제출서식(서식1~4)
2. 기 업 용 제출서식(서식5~7)

- 별첨1. 4대보험가입확인서
- 별첨2. 뿌리산업의 범위